

창원지방법원 2022. 12. 22 선고 2022가단12258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2. 22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,
가. C과 피고 사이에 2022. 7. 8. 체결한 자동차 명의이전 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2022. 7. 8.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이봉수